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8급) 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 월 22 일

경 상 남 도 교 육 청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부서)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인원	비고
동부학생안전체험원	안전교육 전문인력 (방재안전)	8급	6명	

※ 근무기관 소재지: 경남 양산시 동면 수질정화공원로 73(동부학생안전체험원)

2 임용분야 및 주요업무

임용분야 (기관 및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급	업무내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방재안전) (동부학생안전체험원)	8급 (일반임기제)	○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활동 ○ 학교급·발달단계를 고려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체험시설 일상점검,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보수 요청 ○ 체험교육 운영 전·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관리 ○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 및 안전조치 ○ 체험교육 교안, 운영매뉴얼, 안전수칙 등 교육자료 개발 ○ 개원 전 시범운영, 콘텐츠 점검, 동선 확인 등 개원 준비 ○ 교직원 안전교육,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관련 행정업무 ○ 주말 및 공휴일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업무 ○ 그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안전체험교육 관련 업무 (특색사업 등)

3 근거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2)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자)
- 3) 지역·성별: 제한 없음
- 4)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응시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을 갖춘 사람 (단, 안전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자격범위, 학위는 학생안전체험원의 업무 특성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함)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1] 안전영역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자격범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학생안전체험원의 업무 특성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함
①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 격 요 건

안전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및 자격 종류 제한
1. 일상생활안전	1-1 시설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붙임 및 별표참조
	1-2 화재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
	1-3 전기가스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
	1-4 도구사용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
3. 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

②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은 모두 해당
[관련분야 학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해당하는 학과(전공) 학위를 취득한 사람

[우대조건]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5. 보건안전분야/ 5-4. 구조 구급 영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공통사항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주 40시간에 비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별도 명시되어야 함

※ 최종경력(관련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원서접수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로 봄

5 근무기간 및 임용(예정) 시기

가. 근무 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임기만료에 의하여 당연퇴직함. 단,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및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임용(예정) 시기: 2026. 11.(예정)

* 응모 인원과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보수

가.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 지급
-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연봉 하한액	비 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방재안전)	8급	44,296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채용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봉하한액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에 따른 금액임.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연봉외 급여: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기준: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평정 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22. ~10. 2.	2026. 10. 6. ~10. 8.	2026. 10. 19. ~10. 21. (예정)	2026. 10. 22. (예정)	2026. 10. 26. ~10. 28. (예정) 장소 경남교육청	2026. 10. 29. (예정)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개별 문자 통보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www.gne.go.kr) 알림마당/새소식·공지
/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처: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 기간: 2026. 10. 6.(화)~10. 8.(목)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익일특급 등기 우편 접수**

※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8.)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총무과 인사담당

“(안전전문 전문인력_방재안전) 임기제 채용 담당자 앞” 표기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

▷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할 것(☎055-268-1357)

※ **접수 마감 후 3일 내에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유선 연락(055-268-1357)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수수료(5,000원)는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첨부된 서식 활용하여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 응시수수료: 8·9급, 5,000원(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3.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재직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별지 제3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6.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해당자에 한함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상세)이 기재된 것(공고일 이후 발행분)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구 분	내 용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1.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2.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 경력증명서에 근무처 및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근로약정서, 업무분장 내역 등)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u>현재 퇴직한 기관</u>의 경력증명서는 <u>퇴직일 이후</u> 발행분 제출 ○ <u>현재 재직중인 기관</u>의 경력증명서는 <u>공고일 이후</u> 발행분 제출
1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하므로 제출한 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만)	○ 해당자에 한함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났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5. 위임장 1부 (별지 제8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고기관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내용이 미비한 경우 경력·자격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5-268-1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임용 결정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예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전형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응시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아도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또한 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도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www.gne.go.kr) 새소식·공지/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또는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4.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비교: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기타 자격 기준) (삭제)

제7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75호, 2024. 9.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분야	영역	업무범위
1. 일상생활안전	1-1 시설안전	- 다중이용시설*, 다중밀집 안전사고와 승강기 안전사고의 예방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다중이용시설"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1-2 화재안전	화재 및 산불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요령
	1-3 전기·가스안전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4 도구사용안전	도구 및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5 여가활동안전	- 물놀이* 등 각종 야외활동** 및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갯벌,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 "야외활동"이란 산행, 스포츠 활동, 캠핑 등 실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 보행 시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개인용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사고 시 대처요령 * "개인용 교통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 "대중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3. 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 자연재난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요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를 말한다.
	3-2 환경생물방해안전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생물테러 및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에너지 공급마비와 정보통신 사고 시 대처요령
4. 범죠평안	4-1 신변안전	폭력·성폭력, 실종·유괴·납치 등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4-2 소비생활안전	-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소비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전자상거래, 중고거래, 허위·과장 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생활에서 재산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5. 보건안전	5-1 식품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5-2 중독안전	- 약물 및 각종 물질 중독과 흡연·음주 폐해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 사이버 중독의 예방과 대처요령
	5-3 감염안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 시 대처요령
	5-4 구조·구급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의 이론과 실기 습득
	5-5 자살예방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자살 징후 발견 시 대처요령

비고

1. 업무 범위는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포함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제3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1. 일상생활안전	1-1 시설안전	14건설	141건축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	기사
				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
				건축시공	기술사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	기술사
			142토목	농어업토목	기술사
				토목	기사
				토목	산업기사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및기초	기술사
				도로및공항	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수자원개발	기술사
				지질및지반	기술사
				철도	기술사
				철도토목	기사
				철도토목	산업기사
				철도토목	기능사
				토목시공	기술사
				토목품질시험	기술사
				항만및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해양공학	기사
			143조경	조경	기술사
				조경	기사
				조경	산업기사
			144도시·교통	조경	기능사
				도시계획	기술사
				도시계획	기사
		20전기·전자	201전기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전기응용	기술사
				전기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능사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건설안전	기술사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종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건설안전 건설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방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252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기사
		16기계	162기계장비설비 · 설치	승강기	기사
				승강기 승강기	산업기사 기능사
	1-2 화재안전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방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1-3 전기·가스안전	16기계	162기계장비설비 · 설치	전기 전기 전기 전기응용 가스 가스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20전기·전자	201전기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가스 가스 가스 전기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방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1-4 도구사용안전	15광업자원	151채광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52광해방지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술사 기사
		16기계	162기계장비설비 · 설치	농업기계 농업기계	기사 산업기사
		18화학	181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기술사 기사 기사 산업기사
				182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24농림어업	243임업	산림 산림 산림 산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인간공학 화공안전 농작업안전보건 건설기계	기술사 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기술사 기사 기술사 기사 기술사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26환경·에너지	261환경	방재	기사
				대기관리	기술사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수질관리	기술사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토양환경	기술사
				토양환경	기사
				폐기물처리	기술사
				폐기물처리	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	기사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소음진동	기술사
				소음진동	기사
				소음진동	산업기사
				환경	기능사
				환경위해관리	기사
	1-5 여가활동안전	-	-	-	-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14건설	142토목	철도	기술사
				철도토목	기사
				철도토목	산업기사
				철도토목	기능사
				항만및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해양공학	기사
			144도시·교통	교통	기술사
				교통	기사
				교통	산업기사
			16기계	철도차량	기술사
				철도차량	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164조선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조선	산업기사
			165항공	항공	기사
				항공	산업기사
				항공기관	기술사
			166자동차	항공기계	기술사
				차량	기술사
		20전기·전자	201전기	전기철도	기술사
				전기철도	기사
				전기철도	산업기사
				철도신호	기술사
				철도신호	기사
				철도신호	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	기능사
3. 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14건설	141건축	건축	기사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142토목 농어업토목 잠수 잠수 잠수 지질및지반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및기초 수자원개발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144도시·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 기사
		21정보통신	212방송·무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4농림어업	243임업	산림 산림 산림 산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방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26환경·에너지	261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262에너지·기상	기상	기사
		14건설	142토목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26환경·에너지	261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3-2 환경·생물·방사능 안전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농림토양평가관리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환경 환경위해관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술사 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18화학	181화공	화학분석 화학분석	기사 기능사
		26환경·에너지	261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환경위해관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사
		26환경·에너지	262에너지·기상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기술사 기사 기술사
	3-3 에너지·정보통신 안전	14건설	142토목	해양자원개발	기사
		15광업자원	151채광	자원관리	기술사
		20전기·전자	201전기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안전관리	251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전기안전 방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사
		26환경·에너지	262에너지·기상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기사 산업기사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분야	영역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종목	자격종류
		21정보통신	211정보기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능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기술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212방송·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13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
4. 범죄안전	4-1 신변안전	-	-	-	-
	4-2 소비생활안전	-	-	-	-
5. 보건안전	5-1 식품안전	13음식서비스	131조리	조리 한식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복어조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18화학	181화공	화학분석 화학분석	기사 기능사
		22식품가공	221식품	수산제조 수산제조 식품 식품안전 식품	기술사 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2 중독안전	18화학	181화공	화학분석 화학분석	기사 기능사
	5-3 감염안전	-	-	-	-
	5-4 구조·구급	-	-	-	-
	5-5 자살예방	-	-	-	-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분야	영역	
1. 일상생활안전	1-1 시설안전	건축사 주택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1-2 화재안전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1-3 전기·가스안전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1-4 도구사용안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업재난관리사
	1-5 여가활동안전	체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수상구조사 체육지도자 수상구조사
2. 교통안전	2-2 교통안전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3. 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 건축사 수상구조사
	3-2 환경·생물·방사능안전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
4. 범죄안전	4-1 신변안전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일반경비지도사
	4-2 소비생활안전	-
5. 보건안전	5-1 식품안전	영양교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위생사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분야	영역	
		영양사 의사 수산물품질관리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교사
	5-2 중독안전	보건교사 영양교사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5-3 감염안전	보건교사 수의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수산물질병관리사
	5-4 구조·구급	보건교사 의료관리자 소방안전교육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수상구조사
	5-5 자살예방	전문상담교사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제4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고등학교,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안전관련 분야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1. 일상생활안전	1-1 시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환경공학, 기계건축공학, 기계설계공학, 해양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철도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도시교통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산업안전공학, 기업재난관리학, 산업안전관리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1-2 화재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학, 소방방재학
	1-3 전기·가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산업안전관리학, 소방방재학
	1-4 도구사용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신소재안전공학, 보건학, 간호학, 보건교육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가스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학, 기계설계공학, 농기계공학, 기계공학, 산업안전관리학, 소방방재학
	1-5 여가활동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경찰학, 해양스포츠학, 해양레저학, 소방방재학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교통공학, 도시교통공학, 토목교통공학, 해상교통공학, 물류학, 물류시스템공학, 교통물류공학, 항공물류공학, 해양물류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상하수도공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항공학, 항공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항공물류공학, 항공정보통신학, 철도공학, 철도전기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철도토목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조선공학, 조선기계공학, 해양레저학, 해양정보통신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안전관련 분야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3. 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태공학산업안전공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재활심리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미디어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천문학, 기상학, 우주과학, 대기과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설계학, 건축구조학, 건축설비공학, 건설방재공학, 건축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철도토목공학, 상하수도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토목공학, 지리학, 지구과학, 지질학, 지질공학, 지적학, 지반방재공학, 우주과학, 해양계측공학, 기업재난관리학, 산업안전관리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3-2 환경·생물·방사능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태공학, 환경생물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해양공학, 해양생물학, 해양자원학, 해양행정학, 해양계측공학, 천문학, 대기공학, 수자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물정보학, 생물화학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무기화학, 생화학, 응용화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농식품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원자력공학, 원자력계측제어공학, 방사선학, 방사선공학, 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에너지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가스공학, 전기공학, 원자력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환경에너지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의료정보학, 산업안전공학, 소방방재학
4. 범죄안전	4-1 신변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해양경찰학, 경호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상담심리학, 상담학
	4-2 소비생활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정보보호학
5. 보건안전	5-1 식품안전	안전학, 식품영양학, 조리학, 식품생명공학, 농식품공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의학, 의료정보학, 수의학, 간호학
	5-2 중독안전	안전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중독재활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상담학
	5-3 감염안전	안전학,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보건행정학, 의료정보학, 의료행정학, 의학, 수의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소방방재학
	5-4 구조·구급	응급구조학, 소방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안전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의학, 간호학, 소방방재학
	5-5 자살예방	안전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의학, 간호학, 아동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상담심리학, 상담학

비고

1. 과, 학부, 계열, 과정 등은 학과(전공)와 같은 의미로 본다.